「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3. 12. 18. 개정 판 (시행 2023. 12. 1.) → 2025. 10. 13. 개정 판 (시행 2025. 9. 1.)

바뀜 5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34/compare?from=1495&to=1694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3:42:37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선정기준) 연구년 신청 교원의 선정은 전체 교원의 5% 이내로 한다. 학과별 전임교원이 7명 이하인 경우는 동기간에 1명으로 하고, 8명 이상인 경우는 동기간에 2명 이내로 제한하여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1순위. 국가기관, 초청기관 연구비 수혜자 2순위. 기업체 연구비 수혜자 3순위. 우리 대학교 장기 근속자 4순위.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우수자 5순위. 연구년 2회 차 신청자	**제5조(선정기준)** 연구년 신청 교원의 선정은 전체 교원의 5% 이내로 한다. 학과별 전임교원이 7명 이하인 경우는 동기간에 1명으로 하고, 8명 이상인 경우는 동기간에 2명 이내로 제한하여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1순위. 국가기관, 초청기관 연구비 수혜자 2순위. 기업체 연구비 수혜자 3순위. 우리 대학교 장기 근속자 4순위.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우수자 〈삭제 2025-10-13〉
제6조(연구년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휴직교원 및 연구년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연구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재직 중 2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06-08〉 ④ 소정의 승진기간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⑤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⑥ 징계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06-08〉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제6조(연구년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휴직교원 및 연구년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연구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재직 중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06-08〉 ④ 소정의 승진기간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⑤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⑥ 징계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06-08〉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제7조(신분과 대우) ①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승진 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③ 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회당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④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연구보조비를 지원한다.〈개정 2023-12-18〉 ⑤ 〈삭제 2023-12-18〉 ⑥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교내외의 수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12-18〉	**제7조(신분과 대우)** ①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승진 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③ 〈삭제 2025-10-13〉 ④ 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연구보조비를 지원한다.〈개정 2023-12-18〉 ⑤ 〈삭제 2023-12-18〉 ⑥ 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교내외의 수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12-18〉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 연구년제)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별 연구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1. 유급 특별연구년 : 연구과제수주 책임자로서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무급 특별연구년 : 진행 중인 연구결과 도출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08〉	**제9조(특별 연구년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별 연구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1. 유급 특별연구년 : 연구과제수주 책임자로서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무급 특별연구년 : 진행 중인 연구결과 도출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08〉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보고(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5〉 ②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3-12-18〉 ③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급여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3조 ④항에 따른 한 학기(6개월) 신청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채운 시점 이후 ①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④ 근무기간이 정년퇴직일까지 2년 6개월 이하로 남은 교원이 연구년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제11조 ①항에 따른 의무 중 종료보고만 이행하고 연구결과물 게재는 의무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18〉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보고(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5〉 ② 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3-12-18〉 ③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급여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3조 ④항에 따른 한 학기(6개월) 신청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채운 시점 이후 ①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④ 근무기간이 정년퇴직일까지 2년 6개월 이하로 남은 교원이 연구년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제11조 ①항에 따른 의무 중 종료보고만 이행하고 연구결과물 게재는 의무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18〉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5순위. 연구년 2회 차 신청자"를 "〈삭제 2025-10-13〉"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회당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한다."를 "〈삭제 2025-10-13〉"로 한다.

제9조 중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를 "제3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②학과(부)구조개선"을 "② 학과(부)구조개선"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을 "①항"으로 하고, "2회차"를 "다음 회차"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